구입(물품·기타) 지 출 결 의 서

| 증 제 | | ই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|
| 담 | 당 | 팀 | ! 장 | 재두 | - 관 | | 015년도 일반회계 | 취급자 | 지출원 | 지출원 | |
| | | | | | | <i>ب</i> | 세출과목 | | | | |
| 발 | 9 |] | 2015.11. | • | 인 | 조 직 | 의회사무국 | 발 의 | 2015.11. | 인 | |
| 원인 기 | .행위 ^트 | 쿠 위 | 2015.11. | | 인 | 정 책 | 지방의회운영지원 | · 지출부기재 | 2015.11. | <u></u> 인 | |
| 주 | E U | 1_ | 2015.11. | | 인 | 단 위 | 의정활동지 원 | 기월구기제 | 2015.11. | 긴 | |
| 납 | 吾 | <u>E</u> | 2015.11. | | 인 | 세 부 | 기 본 경 비 | 지급명령 | 2015 | 인 | |
| 검 | ŕ | = | 2015.11. | • | 인 | 편성목 | 일 반 운 영 비 | 발행부기재 | | | |
| 물품 기 | ·출납 ⁵ | 쿠 개 | 2015 | • | 인 | 통계목 | 사 무 관 리 비 | 지 급 명 령 번 호 | 제 | ই | |

금사십삼만원(금430,000원)

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

2015년 11월 일

주소 : 서울 동작구 상도로 34길 53

상호 : 시디즈 동작점 성명 : 송 미 주 인

| 적 요 | 거래은행 우리은행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(d) Tr | 계좌번호 130-05-063810 | | |
| 위 금액을 청구함. | 위 금액을 영수함. | | |
| 2015년 11월 일 | 2015년 11월 일 | | |
| 성 명 송미주 인 | 성 명 이정열 인 | | |
| 주관과 동작구의회 구의회 사무국 | | | |
| 취급자 | | | |

| 구 입 물 품 명 세 서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|--|--|
| 품 명 | 규 격 | 단 위 | 수 량 | 단 가 | 금 액 | 비고 | | | |
| 사무용의자 | 660×550×10 040mm | 조 | 1 | 390,910 | 390,910 | VAT별도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
승 낙 사 항

- 1.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,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.
- 2.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,000분의()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.
- 3.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·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.
- 4.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
- 5.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.